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의안 번호	1991
----------	------

2024년 9월 9일
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허훈 의원 외 31명

나. 제안일자 : 2024년 08월 12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08월 14일

라. 상정일자

○ 제326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2024년 9월 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윤기섭 의원)

가. 제안이유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불법주정차 및 청소년들의 불법주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를 개별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을 중점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의식 개선 등 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
- 개인형이동장치의 불법주정차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를 개별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8. 20. ~ 8. 24.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

○ 제출의견 : 원안가결

-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청소년 이용자를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사업의 수익자인 대여 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장 또는 거치대를 공동으로 설치하도록 해주·정차위반 근절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수용하고자 함

1) 보행자전거과-3174호(2024.8.27.)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홍보토록 하고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대여 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개별 및 공동으로 설치·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안전교육 관련(안 제9조제1항제7호)

- 안 제9조제1항제7호는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 및 홍보 내용 중 현행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 대한 안전문화 확산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청소년 등 개인형 이용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20대 이하 청소년들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율(32.4%)이 높은 실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를 ‘청소년 등’으로 변경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도록 강조함과 동시에 교육 및 홍보대상을 청소년에만 한정하지 않도록 ‘청소년 등’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연령대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2)

[Table 3] Traffic Accident Statistics by Age Group(2017~2022)

Classification	Age Group (Cases, %)							Total (Cases, %)
	Under 20s	20s	30s	40s	50s	60s	Over 70s	
Personal Mobility	1,900 (32.4)	1,881 (32.1)	859 (14.7)	550 (9.4)	348 (5.9)	166 (2.8)	156 (2.7)	5,860 (100.0)
Bicycle	6,038 (19.3)	3,095 (9.9)	2,404 (7.7)	3,215 (10.3)	5,114 (16.3)	5,472 (17.5)	5,974 (19.1)	31,312 (100.0)
Vehicles	25,541 (2.1)	158,388 (13.3)	185,758 (15.6)	222,796 (18.7)	288,535 (24.2)	222,584 (18.7)	88,578 (7.4)	1,192,180 (100.0)

Source: Korea Road Traffic Authority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TAAS)

■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관련(안 제13조제3호)

- 안 제13조제3호는 현행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한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운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주차장·거치대의 개별·공동 설치·운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서울시와 관련 업계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관련 민원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개별 및 공동으로 거치대 설치를 통해 무질서하게 방치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 문제해소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훈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991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8월 12일

발 의 자: 허 훈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지향,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박 석, 박춘선,
서상열, 송경택, 윤기섭,
윤영희, 이상욱, 이영실,
이종태, 이효원, 임춘대,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황철규 의원(31명)

1. 제안이유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불법주정차 및 청소년들의 불법 주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를 개별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을 중점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의식 개선 등 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
- 나. 개인형이동장치의 불법주정차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를 개별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개인형”을 “청소년 등의 개인형”으로 한다.

제13조제3호 중 “주차장 및 거치대”를 “주차장·거치대의 개별·공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7. 그 밖에 <u>개인형 이동장치</u>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② (생략)</p> <p>제13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3. <u>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u> 설치 및 운영</p> <p>4. ~ 8. (생략)</p>	<p>제9조(안전교육 등) ① ----- -----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u>청소년 등의 개인형</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u>주차장·거치대의 개별·공동</u> ----- -----</p> <p>4. ~ 8.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제1항제7호 중 “개인형”을 “청소년 등의 개인형”으로 하고, 제13조제3호 중 “주차장 및 거치대”를 “주차장·거치대의 개별·공동”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